

예산총칙

2020년도 본예산

제 1 조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307,211,220	39,216,337
일반회계	1,155,826,723	34,674,802
특별회계	151,384,497	4,541,535
공기업특별회계	126,213,237	3,786,397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63,842,384	1,915,272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2,370,853	1,871,126
기타특별회계	25,171,260	755,13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845,952	175,379
수질개선특별회계	764,160	22,925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3,745,455	112,36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200	6
주택사업특별회계	2,736,745	82,102
농공단지특별회계	251,000	7,530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100,500	3,015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661,309	79,839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12,500	37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956,800	28,704
도시개발특별회계	4,804,000	144,120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3,292,639	98,77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20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52,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